

#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988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8. 29.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2025. 8. 2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5. 9. 10.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 가. 제안이유

2025년 12월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재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위탁근거

-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2)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 3)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 및 위탁)
- 4)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 다. 위탁 추진 필요성

- 1)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필요
- 2)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민간 위탁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도모

## 라. 위탁내용

### 1) 위탁대상

|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종사자 | 주요 내용                      |
|-----|-------------------------|-------------------------------------|------|-----|----------------------------|
| 재위탁 | 고성군<br>장난감도서관           | 고성읍 156번길 36<br>(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4<br>층) | 399㎡ | 1명  | 장난감 대여실<br>놀이공간, 사무공간<br>등 |
|     | 고성군 공동육<br>아<br>나눔터 1호점 |                                     | 92㎡  | 1명  | 놀이공간,<br>활동실 등             |
| 재위탁 | 고성군 공동육<br>아<br>나눔터 2호점 | 고성읍 송학로47-3<br>(공공실버주택 2층)          | 75㎡  | 1명  | 놀이공간, 사무공간<br>등            |

2)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간(2026. 1. ~ 2030. 12.)

### 3) 위탁사무내용

-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4) 선정방법: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5) 소요예산(2025년 예산 기준)

-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163,244천 원  
(장난감도서관 105,000,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58,244천 원)
-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58,244천 원

##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바. 추진일정

- 2025. 8.: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5. 9.: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2025. 10.: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5. 11.: 서류심사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위탁체 선정 공고 및 통지
- 2025. 11.: 위탁 협약체결

##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등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2호점 그리고 고성군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 동의안 내용 검토

- 민간위탁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함
- 민간위탁 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시설의 위탁)제2항 규정에 따라 5년으로 적합
- 수탁기관 선정방식 적정성: 공개모집 원칙으로 적정
  -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적정
- 위탁 사업예산의 적정성: 국비(기금), 도비 예산지원 범위에 따라 증감 되는 사업으로 2025년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적정
  - ※ 위탁 연도별(2026년~2030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충족함을 검토함.
-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사전 이행
  -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항목 검토

-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고성군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9. 10.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